

2004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및 의견서

2004년도 평창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05. 5. 9~5. 28(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우강호(총괄)
 - 검사위원 : 정장용(세입, 공유재산, 기금, 금고, 물품)
 - 검사위원 : 김진석(세출, 이월사업)
 - 검사위원 : 조규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채권,채무등 전체)

평창군결산검사위원

2004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평 창 군 수 귀하

2005년 5월 30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로부터 평창군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5년5월9일부터 2005년5월28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을 포함한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제반법규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제46조, 제47조
- 지방재정법제41조, 제42조, 제110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8~40조
-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
-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7조

2. 검사기간 : 2005. 5. 9 - 5. 28(20일간)

3. 위원별 검사분야

- 대표위원 우강호 : 결산총괄
- 위 원 정장용 : 일반회계세입, 공유재산, 물품, 기금, 금고결산
- 위 원 김진석 : 일반회계세출, 계속비, 이월비
- 위 원 조규태 :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 채권, 채무 등 전체

4. 검사방법

-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 실시
- 계수의 과오 여부를 증빙서류와 상호대조 검사

5.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

1) 세입분야

- 결산서와 징수부 대사
-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의 적정성
- 체납액 정리 및 미수납액 관리의 적정성
- 결손처분의 적정성
- 여유자금의 적정한 관리 및 이자수입의 증대노력

2) 세출분야

- 결산서와 지출장부의 대사
- 법제, 원칙 등에 입각한 적정한 지출여부
-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적정여부
- 예산전용 및 불용처리의 타당성
- 예비비 운영의 적정성
-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3)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 결산서와 세입징수부, 지출장부 대사
- 주택융자금 관리
- 국공유재산, 대부재산등 재산의 성실한 관리 여부
-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상태

6. 검사결과 및 의견서 : “별첨” 과 같음.

2005년 5월 30일

대표검사위원

우 강 호



검 사 위 원

김 진 석



검 사 위 원

정 장 용



검 사 위 원

조 규 태



2004회계연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2004연도의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회계별 예산 규모 및 세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 결산총괄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년 도 (2003)	292,509,639,490	296,179,815,398	292,174,220,112	143,261,720	3,862,333,566
당해년도 (2004)	287,224,399,470	301,065,849,234	293,413,124,980	961,805,364	6,690,918,890

가. 세입결산 개요

- 2004년도 실제수납액 293,413,124,980원은 예산현액의 102.15%로서 6,188,725,510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7.46%로 나타남.

※ 2003년도

- 실제수납액 : 292,174,220,112원 (예산현액의 99.88%)
- 징수결정액 : 296,179,815,398원 (예산현액의 101.25%)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년도(2003)	196,900,037,000	95,609,602,490	292,509,639,490	198,017,992,408
당해년도(2004)	202,285,208,000	84,939,191,470	287,224,399,470	209,575,829,585
익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84,939,191,470	9,552,455,612	94,156,227,704	671,151,075	8,545,885,159
64,608,448,020	13,040,121,865	83,837,295,395	399,839,596	18,829,007,779

가. 세출결산의 개요

- 200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 증가한 202,285,208,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84,939,191,4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87,224,399,470원임.
- 지출액은 209,575,829,585원으로 예산현액의 72.97%임
이월사업비 중 자금 없는 이월액은 없었으며,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예산현액(㉑)	이월사업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㉒)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당해연도 (2003)	292,509,639,490	169건 84,939,191,470	86건 46,931,673,260	62건 10,149,930,920	21건 27,857,587,290	29%
당해연도 (2004)	287,224,399,470	136건 64,608,448,020	64건 22,108,945,190	40건 5,654,113,070	32건 36,845,389,760	22%

- 3)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5%에 해당하는 13,040,121,865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829,007,779원으로 예산현액의 6.6%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년 도 (2003)	248,617,394,020	252,054,065,855	248,222,467,395	143,261,720	3,688,336,740
당해연도 (2004)	223,761,093,730	237,223,692,822	232,870,391,512	625,094,640	3,728,206,670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232,870,391,512원으로 예산현액의 104%이고 징수결정액은 237,223,692,822원으로 예산현액의 106%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8.2%임.

※ 2003년도

- 실제수납액 : 248,222,467,395원 (예산현액의 99.8%)
- 징수결정액 : 252,054,065,855원 (예산현액의 101.4%)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2003)	172,422,118,000	76,195,276,020	248,617,394,020	184,126,050,253
당해연도(2004)	167,728,667,000	56,032,426,730	223,761,093,730	180,681,865,150
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56,032,426,730	8,458,917,037	64,096,417,142	649,372,385	7,414,618,027
33,755,393,900	9,323,834,680	52,188,526,362	320,581,906	18,112,550,556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167,728,66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6,032,426,73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3,761,093,730원임
- 이월사업비는 총 104건에 33,755,393,900원으로 예산현액의 15.1%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년도 (2003)	248,617,394,020	148건 56,032,426,730	81건 45,012,223,260	59건 7,715,011,720	8건 3,305,191,750	23%
당해연도 (2004)	223,761,093,730	104건 33,755,393,900	60건 21,027,280,660	37건 5,595,854,070	7건 7,132,259,170	15%

3. 특별회계 세입·세출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전 연 도 (2003)	43,892,245,470	44,125,749,543	43,951,752,717	0	173,996,826
당해연도 (2004)	63,463,305,740	63,842,156,412	60,542,733,468	336,710,724	2,962,712,220

가. 세입결산 개요

- 실제수납액은 60,542,733,468원으로 예산현액의 95.4%이며, 징수결정액은 63,842,156,412원으로 예산현액의 100.6%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4.8%임.

※ 2003년도

- 실제수납액 : 43,951,752,717원 (예산현액의 100.1%)
- 징수결정액 : 44,125,749,543원 (예산현액의 100.5%)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2003)	24,477,919,000	19,414,326,470	43,892,245,470	13,891,942,155
당해년도(2004)	34,556,541,000	28,906,764,740	63,463,305,740	28,893,964,435
이월액	집행잔액	차인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28,906,764,740	1,093,538,575	30,059,810,562	21,778,690	1,131,267,132
30,853,054,120	3,716,287,185	31,648,769,033	79,257,690	716,457,223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34,556,54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63,463,305,740원임.
- 이월사업비는 총 32건에 30,853,054,120원으로 예산현액의 48.6%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예산 현액대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2003)	34,450,614,470	21건 26,074,652,130	5건 1,855,450,000	3건 2,413,919,200	13건 21,805,282,930	75%
당해연도 (2004)	63,463,305,740	32건 30,853,054,120	4건 1,081,664,530	3건 58,259,000	25건 29,713,130,590	48.6%

※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 현황임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1) 기금

(단위 : 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2003)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04)
		계	수납액	지출액	
총 계	2,537,305,660	250,308,022	587,546,862	337,238,840	2,787,613,682
재해대책기금	409,076,810	△82,110,940	185,177,900	267,288,840	326,965,870
재난관리기금	130,942,870	27,826,710	27,826,710	-	158,769,580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102,827,440	△550,000	4,450,000	5,000,000	102,277,440
노인복지기금	849,187,890	65,340,201	10,340,201	35,000,000	914,528,091
장애인복지기금	578,956,570	△17,771,369	178,631	17,950,000	561,185,201
평창군장학기금	254,001,650	100,456,290	112,456,290	12,000,000	354,457,940
여성발전기금	212,312,430	157,117,130	157,117,130	-	369,429,560

가. 기금결산의 개요

○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7개로

기금현재액은 2003년도 2,537,305,660원 보다 250,308,022원이 증가된 2,787,613,682원을 관리하고 있음.

2) 채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2003)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04)	
			계	원금	이자		
합 계	2,960,596,950	1,460,242,693	1,284,596,397	1,055,925,897	228,670,500	3,136,243,246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주택사업	1,450,144,230	515,732,276	495,422,280	322,656,270	172,766,010	1,470,454,226
	주민소득지원	1,509,380,280	944,510,417	788,353,947	732,449,457	55,904,490	1,665,536,750
	의료급여	1,072,440	-	820,170	820,170	-	252,270

가. 보유채권 현재액은

- 2003년말 현재액 2,960,596,950원에서
- 2004년도에 1,460,242,693원이 발생, 1,284,596,397원이 소멸되어
- 2004년도말 현재액은 3,136,243,246원임.

3) 채 무

(단위 : 원)

회계별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15,945,326,030	△1,813,748,030	3,152,301,000	4,966,049,030	14,131,578,000
일	반 회 계	5,174,016,000	△109,493,000	3,152,301,000	3,261,794,000	5,064,523,000
특 별 회 계	소 계	10,771,310,030	△1,704,255,030	-	1,704,255,030	9,067,055,000
	상수도사업	10,064,600,000	△1,381,600,000	-	1,381,600,000	8,683,000,000
	주택 사업	706,710,030	△322,655,030	-	322,655,030	384,055,000

가. 평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 2003년도말 현재액 15,945,326,030원에서
- 2004년도에 1,813,748,030원을 상환하여
- 2004년도말 현재액은 14,131,578,000원임.

4) 공유재산

○ 용도별 현황

(단위 : 원)

용도별	구 분	2003년말현재액	2004년말현재액	증감(△)
합	계	84,162,943,000	119,009,589,000	34,846,646,000
행 정 재 산	계	50,124,949,000	85,312,179,000	35,187,230,000
	공공용재산	35,400,685,000	69,233,308,000	33,832,623,000
	공용 재산	14,564,911,000	14,888,934,000	324,023,000
	기업용재산	159,353,000	1,189,937,000	1,030,584,000
보	존 재 산	-	-	-
잡	종 재 산	34,037,994,000	36,697,410,000	2,659,416,000

가. 2004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3년말 현재액84,162,943,000원에서
34,846,646,000원이 증가한 119,009,589,000원으로

- 토지 125,754,000m² 104,584,647,000원
- 건물 59,025m² 14,424,942,000원

5) 물 품

(단위 : 천원)

정수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2004년말 현재액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1,058	수량	667	217	58	275	42	48	90	852
	금액	4,101,074	834,931	129,235	964,166	248,537	203,408	451,945	4,613,295

가. 2004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003년말 현재액 4,101,074천원보다
512,221천원이 증가한 4,613,295천원으로 신규 취득 964,166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451,945천원이 감소함.

5. 세입·세출외 현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2004년 증감내역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928,570,051	585,806,195	4,763,930,370	4,178,124,175	1,514,376,246
부 담 금	-	-	-	-	-
위 탁 금	100,011,617	250,215,125	483,734,995	233,519,870	350,226,742
보 증 금	205,835,850	107,308,390	108,027,940	719,550	313,144,240
일시보관금	495,975,283	233,840,850	2,513,206,080	2,279,365,230	729,816,133
잡종금등기타	126,747,301	△5,558,170	1,658,961,355	1,664,519,525	121,189,131

가. 2004년도말 현재액은 1,514,376,246원으로
2003년도말 928,570,501원보다 585,805,745원이 증가함.

6. 검사결과

□ 총 평

2004년도 평창군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각종 장부 및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검사한 결과 관련공무원들의 꾸준한 법규연찬 및 정확한 결산에 대한 의지로 계수과오는 없었으며, 재무운영의 적법성, 효율성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가. 일반회계기준 세입은 전년대비 6.1% 감소하였으며 관련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재정보전금 등의 증액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3.6% 증가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나. 세출분야에서는 사업비 확보이전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비 예산편성 이후에는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부당하게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 또는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새농어촌우수마을시상등 18건의 세출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등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

□ 주요지적사항

가.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또는 수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용처리 함

나. 회계연도 말(11월) 동절기 시작시점에 예산배정을 함으로서 사업시기 촉박 등으로 부득이 예산을 이월시키는 문제점 발생

- 다. 이월사업(명시,사고)은 최소화되어 회계연도내 행정목적이 달성되어야 함에도 사업계획의 확정지연이나 사업계획 변동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관행처럼 매년 반복되는 것은 지양 되어야 함
- 라. 수해복구사업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복구되어야 함
사업자체가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임
- 마. 승인된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년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며 사업기간 연장등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업계획이 요구됨
- 바. 물품관리소홀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 체납액 및 세외수입에 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지적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산 불일치 자료도 조속히 정리 하여야 할 것임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

지 적 사 항 목 록

번호	제 목
1	예산미집행 불용예산 발생(전실과)
2	사회단체 등 모든 보조금 지급단체의 정산서 제출(전실과)
3	자동차관련 체납 과태료 증대(민원봉사과)
4	물품관리소홀(재무과)
5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 소홀(재무과)
6	신중한 지방세 결손처분(재무과)
7	징수유공자 포상제도(재무과)
8	아시아나개발(주) 세외수입 체납(재무과)
9	지방세(세외수입)체납자 관리소홀(재무과)
10	국유재산 무단 점유(재무과)
11	평창수석공원 조성사업 부진(문화관광과)
12	계촌, 등매보건진료소 신축공사(보건의료원)
13	주택특별회계 결산 불합리(지역도시과)
14	상수도사용요금 체납액 일소(지역도시과)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 사항

○ 번호 : 1

○ 제목 : 예산 미집행 불용예산 발생

○ 현황

▶ 소송수행자 포상금 등 세출예산 불용처리

○ 문제점(개선사항)

▶ 예산수립 후 집행사유 미발생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한 예산이 18건 발생

▶ 군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감사자 의견

○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편성 시 삭감 또는 수정을 통하여 필요한 타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 사항

○ 번호 : 2

○ 제목 : 사회단체 등 모든 보조금 지급단체의 정산서 제출

○ 현황

▶ 일부 단체의 경우 정산서 작성 시 일자별 지출금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보조금 통장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있음

○ 문제점(개선사항)

▶ 보조금 통장사본을 첨부하지 않음으로써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못함

감사자 의견

○ 보조금을 받은 모든 단체는 정산서 제출시 보조금통장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지급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필요가 있음

○ 통장사본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가 사료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 사항

○ 번호 : 3

○ 제목 :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증대

○ 현황

▶ 1997~2004년도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가 7,491건에 1,009,017원 발생, 징수율49%

○ 문제점(개선사항)

▶ 현안적인 부과업무 처리에 밀려 자동차 압류 후 납부 독려 및 징수 업무 소홀

▶ 체납자는 법령에 가산금 부과규정이 없음을 악용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시 자진 납부 기피

감사자 의견

○ 교통행정 직원을 증원해서라도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하고 적극적인 체납 독려 및 징수를 하여야 할 것임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 사항

○ 번 호 : 4

○ 제 목 : 물품관리소홀

○ 현 황

▶ 2004년 재물조사(2004.6.1~6.30)시 물품을 전산처리하여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물품 구입과 동시 전산입력하고 있음

○ 문제점(개선사항)

▶ 정수, 비정수 물품 현황을 물품관리 담당직원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컴퓨터에만 의존하고 있음

▶ 내부행정 시스템의 물품가격 입력시 단위를 확인하지 않아 70만원인 냉장고 가격이 700원으로 입력되는 등 이와 같은 사례가 여러 건 있었음

감사자 의견

○ 정기적으로 전산 입력된 물품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지침교육과 지도감독으로 군과 실과소 읍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요망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 사항

○ 번호 : 5

○ 제목 :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 소홀

○ 현황

▶ 고액체납자 68건 1,464,578,160원에 대하여 징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징수독려하고 있으나 징수 미흡

○ 문제점(개선사항)

▶ 지방세 고지 절차 및 소요시간 지연

감사자 의견

○ 무재산 및 압류 실익이 없거나 징수 불가능한 지방세 체납액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결손 처분 실시

○ 고액체납자는 특별 관리하여 토지보상비 등 군에서 각종자금 지출시 누락하지 말고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 사항

○ 번호 : 6

○ 제목 : 신중한 지방세 결손처분

○ 현황

▶ 2003년도 과세분 중 257,807,27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음

○ 문제점(개선사항)

▶ 징수권 소멸시효(5년)전에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세금 체납자를 심리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음

감사자 의견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수권 소멸시효(5년)경과 전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독촉장을 발부함으로써 징수권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 사항

○ 번호 : 7

○ 제목 : 징수유공자 포상제도

○ 현황

▶ 과거 2년 이전 과세분의 세금 징수에 대하여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문제점(개선사항)

▶ 세금징수는 징수업무 담당직원의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실시한다면 도덕적해이 가능성이 있음

감사자 의견

○ 포상대상 및 포상금액을 현행보다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호 : 8

○ 제목 : 아시아나개발(주) 세외수입 체납

○ 현황

- ▶ 아시아나개발(주) 한국콘도(현두산용평리조트) 관광숙박계획 승인시 진입로 확포장공사 조건부여
- ▶ 1998.2.11회사 부도로 그간 추진된 진입로 확포장공사의 완료가 어려워 우선 군비를 투자하여 잔여 공사 실시 후 투자사업비를 아시아나개발(주)로부터 분납토록 협의공중
- ▶ 1998년 신축중이던 수안보 콘도미니엄공사 시공사인 극동건설(주) 과 사업자인 아시아나개발(주)의 부도로 공사 중단
- ▶ 군에서 수안보 콘도미니엄 회원권 30구좌 확보

○ 문제점(개선사항)

- ▶ 1999년 4월이후 체납액 403,986원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그 후속 조치는 없었음

□ 검사자 의견

- 징수 가능성이 없으면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줄이고 확보한 수안보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은 제3자에게 경락 후 매각하여 잠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호 : 9

○ 제목 : 지방세(세외수입)체납자 관리소홀

○ 현황

- ▶ 완납자를 체납자명부에 등재
- ▶ 본청 실과소와 읍면 전산 입력자료 불일치
- ▶ 담당직원의 인계인수 소홀로 수산업위반과태료 등 미납된 과태료 징수 소홀

○ 문제점(개선사항)

- ▶ 전산자료 정리 미흡 및 군과 읍면체납자료 불일치로 행정의 불신감 초래

□ 검사자 의견

- 세외수입이 지방재정의 세원확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세외수입담당자 1명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징수부서에서는 월별 또는 정기적으로 각 실과소의 전산 입력자료를 검증하여 정확한 자료 관리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 사항

○ 번호 : 10

○ 제목 : 국유재산 무단 점유

○ 현황

- ▶ 평창읍 중리 315-9(25㎡ 대지) 1998~1999년 2년간 국유재산
대부료 51,660원 미수납
- ▶ 2001~2004년 까지 갱신계약 체결하지 않음

○ 문제점(개선사항)

- ▶ 2001년 갱신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자가 도로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믿고 계약 미체결

검사자 의견

- 현지 출장하여 무단점유로 판단되면 실제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연15%의 연체료도 부과 징수하여야 함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 사항

- 번호 : 11
- 제목 : 평창수석공원 조성사업 부진
- 현황
 - ▶ 사업량 : 수석(바위)테마공원 1식(10,000m²)
 - 수석공원 1식(토목, 조경사업)
 - 기타부대시설
 - ▶ 사업비
 - 600백만원 (국비300 도비90 군비210)
- 문제점(개선사항)
 - ▶ 하천점용허가 미인가로 사업 중단
 - ▶ 타당성 검토 결여

감사자 의견

- 향후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중단 상태인 본 사업이 조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지적 사항

- 번호 : 12
- 제목 : 계촌, 등매보건진료소 신축공사
- 현황
 - ▶ 현 사무실 개인소유부지로 부지확보 지연
- 문제점(개선사항)
 - ▶ 선정한 부지 대금 인상요구로 사업 착공 지연

검사자 의견

- 사업대상 부지선정시 토지주 및 관련자와 협의 후 즉시 매입조치하고 사업착공 후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추경에 반영하여 조속히 완공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지적사항

○ 번호 : 13

○ 제목 : 주택특별회계 결산 불합리

○ 현황

▶ 2004년 결산은 2005.2.28일로 출납폐쇄하고 2005.3.10까지 세입정리 하여야 함에도 2005년도 일부세입을 포함함

▶ 2004년도분 이영환외 15건 30,980,490원에 대하여 결산처리 하여야 하나 2005년분 이장수외 28건 17,974,190원을 2004년 결산에 포함함

○ 문제점(개선사항)

▶ 주택사업특별회계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1월과 2월 회계연도가 중복 되는 2개월간 2004년분과 2005년도분의 구분정리 미흡

감사자 의견

○ 출납폐쇄일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이므로 회계연도가 중복되는 1월과 2월 두달 동안은 세입 세출의 정확한 구분처리 요망

지적사항 및 검사자 의견서

□ 지적 사항

○ 번호 : 14

○ 제목 :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일소

○ 현황

▶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206가구 1,052건에 31,786,490원으로 수납
촉구 요망

○ 문제점(개선사항)

▶ 수도급수조례 40조에 의거 2개월이상 체납시 정수처분을 실시해야
하나 실행되지 않음

□ 검사자 의견

○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발부 시 수용가별 자진납부 계도

○ 자동이체 유도로 체납액 일소

2004회계연도 제입·제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1	예산미집행 비용예산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수립 후 집행사유 미발생 및 사업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비용 처리한 예산이 18건 발생 ○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정편성시 삭감 또는 수정하여 필요한 타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사 단청사업은 문화재청에 현안변경허가 신청중이며, 협의회 미개최, 사업대상시설 미발생, 유지관리성과분석결과 투자효과 감소등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불용처리 되었음 ○ 추후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유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전실과
2	사회단체 등 모든 보조금 지급단체의 정산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단체의 경우 정산서 작성시 일자별 지출금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보조금 통장사본을 첨부하지 않음 ○ 보조금 통장사본을 첨부하지 않아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의 정산서 제출시 보조금통장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사업내용과 지급사실이 명확히 증명되도록 하겠음 	전실과
3	자동차관련 체납 과태료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안적인 부과업무에 밀려 체납액 독려 및 징수업무 소홀 ○ 체납자는 법령에 가산금 부과규정이 없음은 악용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시 자진납부 기피. ○ 직원을 증원해서라도 적극적인 체납독려 및 징수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별로 체납자 독촉고지서 일괄 발송 ○ 사업용 자동차는 압류물건 확보하여 압류 조치(유가보조금 지급) ○ 소멸시효 등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민원봉사과

번호	제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리계획	관련부서
4	물품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비정수 물품 현황을 물품관리 담당 직원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컴퓨터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음 ○ 내부행정시스템의 물품가격자료가 정확하지 않음 ○ 정기적으로 전산 입력된 물품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지침교육 지도 감독으로 군과 실과소 읍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행정 시스템을 이용한 물품관리 철저 지시공문 발송(2005.6.9) ○ 착오 기입된 내용 정정 및 내부행정 자료 점검 후 물품관리 내역을 제출토록 함 ○ 정기적인 재물조사 시 각 실과, 사업소, 읍면 물품관리 공무원 교육 실시 	재무과
5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고지절차 및 소요시간 지연 ○ 무재산 및 압류 실익이 없거나 징수 불가능한 지방세 체납액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결손 처분 실시 ○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하여 토지보상비 등 군에서 각종자금 지출시 누락하지 말고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체납자 개인별 책임징수제 실시 ○ 압류 실익이 없거나 징수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실시 ○ 군에서 각종자금 지출시 징수부서 경우로 체납세액 있을시 체권을 압류하여 체납액 우선 징수 	재무과
6	신중한 지방세 결손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권 소멸시효(5년)전에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세금 체납자를 심리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수권소멸시효(5년)경과 전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독촉장을 발부함으로써 징수권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수권 소멸시효(5년)경과 전에는 결손처분을 보류하겠음 	재무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7	정수유공자 포상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정수는 정수업무담당직원의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실시한다면 도덕적해이 가능성이 있음 ○ 포상대상 및 포상금액을 현행보다 축소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 정수포상금 운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 정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타실과소 직원에게 정수포상금이 최대한 지급 되도록 운영 	재무과
8	아시아나개발(주) 제외수입 채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나개발(주)로부터 투자 사업비 회수건과 수안보 콘도미니엄 회원권 30구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 가능성이 없으면 결손처분 요망 - 수안보 콘도미니엄회원권은 경락 후 잡수입으로 처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나개발(주)의 재산조회결과 4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수건의 압류 및 가압류, 저당설정 등으로 군에서 취득할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며, 국세 및 지방세도 결손처분 한 바 있으므로 정수가능성이 없는 장기 고액채납액 결손처분 ○ 확보한 수안보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은 제3자에게 경락 등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 	재무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9	지방세(세외수입)채납자 관리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납자를 채납자명부에 등재 ○ 본청 실과소와 읍면 전산 입력 자료 불일치 ○ 담당직원의 인수인계 소홀로 수산업 위반과태료 등 미납된 과태료 징수소홀 	<p>○ 전산자료의 미흡의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프로그램관리를 하고있는 행정부 용역업체인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단」 자료관리미흡(구세외수입프로그램을 신세외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채납자오류 발생) ② 고지서를 발송할 때 부과일자와 납부기한을 동일날짜로 처리하여 채납으로 처리되는 경우 ③ 읍면 자료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결 후 자료를 임의로 수정 - 징결을 건별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 - 이중부과등의 원인으로 채납이 남는 경우 <p>○ 원인별 처리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프로그램관리업체인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단」에 요구하여 오류자료 정정하였음(지속적인 관리) ② 읍·면 자료 전산입력시 발생되는 문제점이므로 정확한 자료입력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③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각 실과소의 전산입력자료를 검증하여 정확한 자료 관리 및 징수결정통지서를 징수담당자에게 보내도록 유도하여 재확인 할 계획임 ○ 수산업 위반 과태료는 과태료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채납관련 절차에 의거 독촉장 발급 등 채납액 징수 	재무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10	국유재산 무단 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 무단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평창읍 중리 315-9(25m²) ○ 현지출장하여 무단점유로 판단되면 실제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 현지 확인 후 무단점유 시 대부계약체결 후 5년분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하겠음 	재무과
11	평창수석공원 조성사업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점용허가 미인가, 타당성 검토 결여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어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본사업이 조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점용등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고 불가할 경우 대체부지를 조성하여 금년내 마무리 할 계획임 	문화관광과
12	계촌, 등매보건진료소 신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사무실 개인소유부지로 부지확보 지연 ○ 선정된 부지 대금 인상요구로 사업 착공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촌보건진료소 및 등매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은 2005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토지구 및 관련자와 협의 후 조속히 완공 되도록 노력하겠음 	보건의료원
13	주택특별회계 결산 불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납폐쇄일이 다음연도 2월말로 회계연도가 중복되는 1월과 2월의 세입세출 대하여 정확한 구분처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회계연도에는 출납폐쇄일 마감 다음연도 1월과 2월분에 대한 과년도분과 신년도분의 세입세출구분을 명확히 정리하겠음 	지역도시과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14	상수도사용요금 체납액 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206가구 1,052건에 31,786,490원으로 수납촉구 요망 ○ 수도급수조례 40조에 의거 2개월이상 체납시 정수처분을 해야 하나 실행 하지 않음 ○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발부 시 수용가별 자진납부 계도 및 자동이체 유도로 체납액 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요금 체납 일소를 위한 계획 수립 - 2개월이상 체납시 정수 처분 실시 - 충분한 사전예고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정수 처분 전 자진납부토록 계도 - 자동이체 이용 홍보 - 내고장소식지 및 군 홈페이지지 게재 -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발부 방문 시 자동이체제도 이용 홍보 	지역도시과